

제주교구 소공동체 정착과 발전



천주교 제주교구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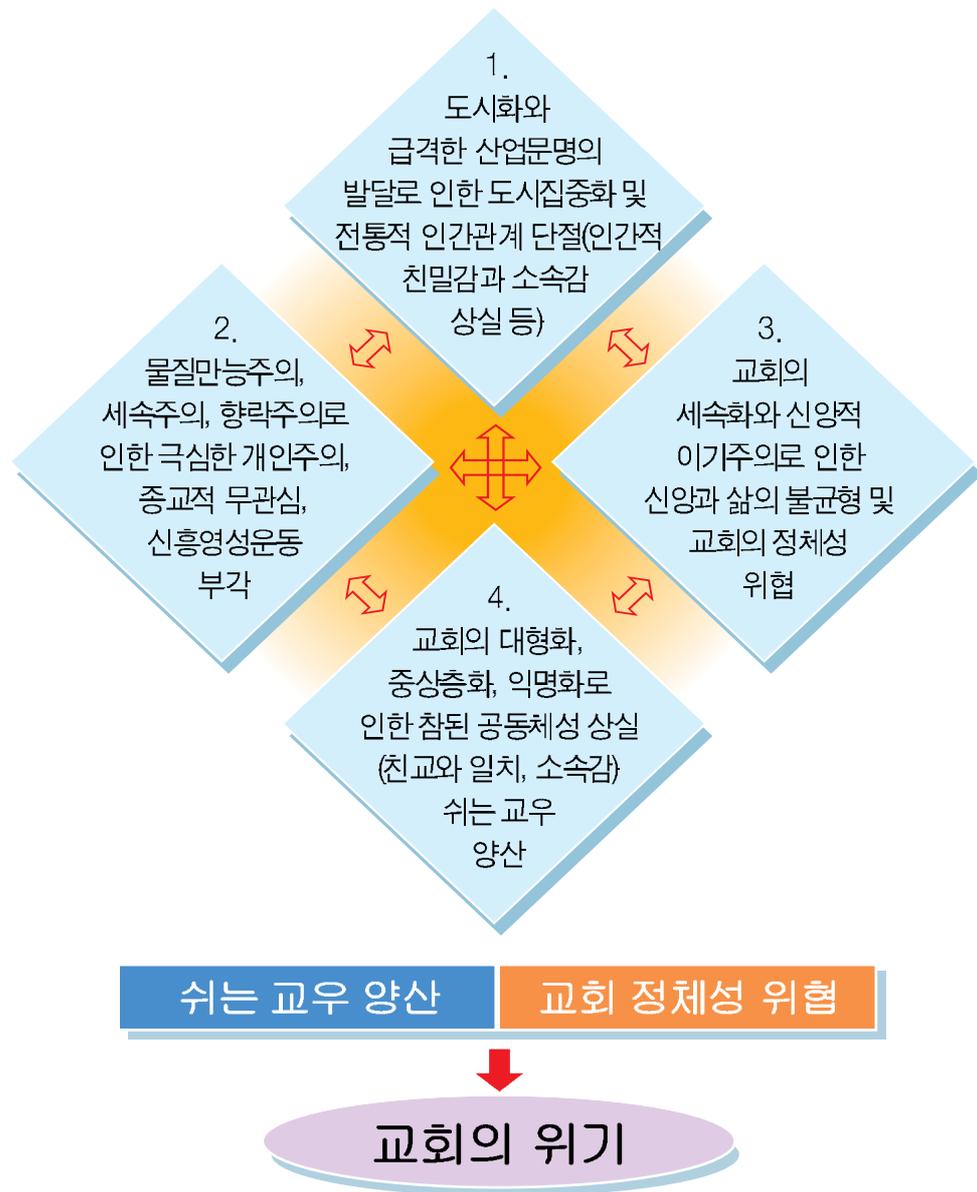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각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주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치는 새로운 교회상, 즉 친교와 일치(KOINONIA)의 교회공동체를 구현하여 우리 제주교구를 ‘머물고 싶은’ 교회, ‘소속되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2003년 교구장 사목교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공동체의 해’ 중에서)

이 복음화의 여정은 한 두 해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안팎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이 필요하다. (2004년 교구장 사목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한 해’ 중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초공동체란 소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경독서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공동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들은 교회의 활력의 표시이고 신자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다.”
(교회의 선교사명 51항)

추진 이유

소공동체는 현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교회쇄신의 여정이다. 이에 현 제주교구와 본당의 모습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복음적, 사목환경적, 사회환경적 진단이 요구된다.



추진 배경

소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교회론과 교도권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지역교회의 사목비전과 방침에 공감하며 제주교구는 소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사도행전 2,42)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 저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6-47)

- ▶ 초대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정말 한마음으로 모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2003년 제주교구장 사목 교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공동체의 해’, p5에서)



■ 제2차 바티칸공의회 of 교회론

교회는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백성이자 진정한 참여 공동책임의 소명을 지닌 친교의 공동체이다.(교회헌장 2-4, 9항 참조)

- ▶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는 삼위일체의 친교에 근거를 두며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친교를 잇는 힘이자 표지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교이고 모든 민족의 친교의 장소이자 상징이다.(아시아 주교 대의원 회의 의안집, 35항 참조)



■ 교회의 가르침

- 기초교회공동체(Basic ecclesial Community)는 복음화의 터전이 되고, 보편교회의 희망이다.(교황 바오로 6세가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1975), 58항 참조)
 - 기초공동체는 참다운 친교의 표현이며 친교의 구조를 이룩하는 수단이다.(「로마 특별 주교 시노드 최종보고서」(1985), 참조)
 - 소규모의 기초공동체들(Small, basic or so-called “Living” communities)을 본당 안에서 육성해야 하며 교회적 친교의 진정한 표현이며 복음선포의 중심이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1988), 26항 참조)
 - “작은 공동체들은 초대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 2, 44-47; 4, 32-35 참조)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들로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도와줍시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아시아교회」(1999), 25항 참조)
- ▶ 소공동체들은 ‘교회의 활력의 표시이고 신자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 (교회의 선교사명 51항)으로서 친교의 교회론을 실현하는 교회적 실재이자 사목적 대안이다.



■ 남아프리카 룸코연구소의 사목적 비전과 원리

-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평신도들이 교회 사명 수행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공동체(Small christian community)를 건설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실현하고 교회의 복음화 과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 소공동체는 삶의 현장에 뿌리내린 교회의 지역적 육화이며, 구성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28-29 참조)



■ 제5차 아시아 주교회의 총회(1990, 반둥)

- 아시아 안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양식 (a new way of being Church in Asia)인 ‘공동체들의 친교’ (communion of communities)를 실현하기 위해 소공동체를 추진한다. (제 5차 아시아 주교회의 총회 선언문 8.1.1참조)
- 아시아 주교회의 평신도사무국 산하에 ‘AsIPA’ (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 : 아시아의 통합적인 사목 접근)를 설치하고 아시아 지역의 소공동체 활성화에 빠르게 움직인다. (강우일주교, ‘한국천주교 소공동체 도입에 대한 성찰’, 14~15 참조)
- ▶ 소공동체는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화하고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표지이자 도구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복음의 힘으로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복음화의 터전으로서 2천년대 아시아 교회가 걸어가야 할 비전이다.



■ 서울대교구의 2천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 서울대교구는 2천년대 복음화의 핵심과제로 FABCA가 제시한 소공동체 건설을 선택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1992년 소공동체를 도입한다.
- 10년에 걸친 장기 사목계획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소공동체를 뿌리내리는데 주력한다.
- 우여곡절을 겪으며 교구 및 본당에서 눈에 띄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우일주교,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 도입에 대한 성찰’, 15-19 참조)
- ▶ 소공동체 운동은 서울대교구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갔고, 심지어는 이웃나라 일본교회 (나가사키교구, 삿포르교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이자 중점 사목 방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제주교구의 소공동체를 통한 희망의 여정

- 제주교구는 교구 중점 사목방향으로 소공동체의 건설과 활성화를 삼는다.
- 장기적이고 일관된 추진계획에 따라 활력과 희망의 여정을 시작한다.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교구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가족과 같은 소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 (2003년~2008년 교구장 사목교서 중에서)
- ▶ 소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이기에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하느님백성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과 헌신을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2003년 교구장 사목교서 중에서)



추진 과정

소공동체는 하느님 나라 건설의 예표요 도구이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겨자씨에 비유되듯, 소공동체 역시 시작부터 성장까지 과정을 겪는다. 현재 제주교구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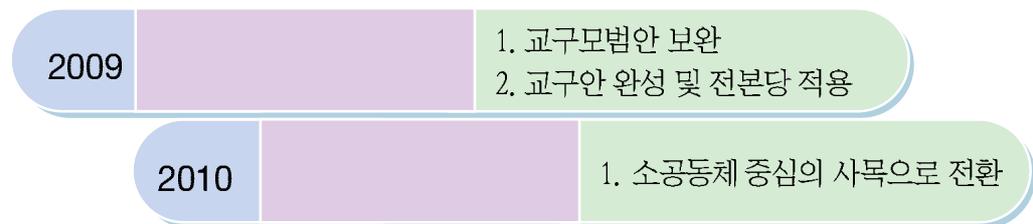
1. 씨부리기

2002년 10월	교구장, 소공동체 도입 의향 피력	1. 제주교구의 활력과 희망의 여정 출발
2003	말씀을 증거하는 소공동체의 해 (소공동체 원년 선포)	1. 교구사제단 소공동체 연수 2. 제1차 제주교구 소공동체대회
2004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한 해 (소공동체와 말씀의 생활화)	1. 전국 소공동체 팀트레이닝 2. 제2차 제주교구 소공동체대회

2. 발아기

2005	가정안에 육화하는 소공동체 (소공동체와 가정)	1. 구역반장의 체계적인 양성 2. 가족복음나누기
2006	사랑의 실천으로 가족을 이루는 소공동체 (가정을 체험하는 소공동체)	1. 분당별 소공동체교육 2. 시범분당선정(서귀포)
2007	자녀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신앙의 소공동체 (소공동체와 청소년 I)	1. 교구모범안 준비 - 서귀포성당 설문조사 실시 2. 시범분당확대(평양, 중앙, 동광, 동문 신제주, 노형, 서귀북자, 한림)
2008	젊음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소공동체와 청소년 II)	1. 교구모범안 발표 2. 교구모범안 시범분당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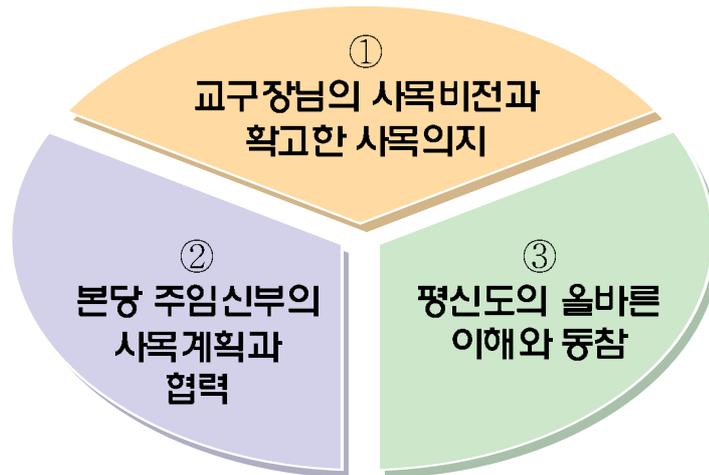
3. 성장기



요약 설명

- 교구장께서 2002년 소공동체 도입 의향을 피력한 후인 그 다음 해 2003년 연두사목교서를 통해 소공동체 원년을 선포하여, 장기적인 전망하에 소공동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교회의 다양한 사목주제를 소공동체의 비전과 함께 제시하여 소공동체를 통합 사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제주교구는 씨뿌리기 → 발아기 → 성장기 단계를 밟고 있으며, 지금은 발아기의 중간 단계 즈음에 자리하고 있다.
- 씨뿌리기 단계에서는 갈등과 혼란(이해부족, 비판, 저항, 비협조적인 자세 등)을 겪으며, 발아기 단계에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서서히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며, 성장기 단계에서는 가시적이고 은혜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교회다운 교회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 날까지 2천년대 제주교구가 걸어가야 할 교구 중점 사목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소공동체 활성화 조건



교구장의 사목비전과 확고한 사목의지

1 사목 비전이란?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관할 교구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체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교회법 381조 참조)

이에 교구장 주교는 교회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 하에 교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 주고, 자신의 직접적인 협력자인 사제들에게 이의 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평신도그리스도인 26항 참조)

이런 교구장 주교의 사목적 비전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서 관할 교구공동체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버팀목이 된다.

2 교구장 사목의지

교구의 사목비전과
최우선적 사목방침으로
'소공동체'를 설정하기

장기적인 전략과 전망
하에 "매년 소공동체 관련
사목교서 발표하기"

사제평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안 모색하기

사목방문 동안에
본당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기

교구 사제들을
만날 때마다
동기부여를 해주기

사목방문동안에
본당소공동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격려해 주기

"교구관련 모든 회의에
앞서 복음나누기를
실시하기"

본당신부의 사목계획과 협력

1 사목계획이란?

본당신부는 연초 교구장 주교의 사목교서를 바탕으로 본당사목계획을 수립한다. 사목계획은 현 본당공동체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해 보고 한 해동안 걸어가야 할 본당의 올바른 사목방향을 정하여 역량의 낭비나 시행착오없이 질서있게 본당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교구 사목계획서 수립을 위한 지침서, 2면 참조) 여기서 교구장의 사목방향을 우선하지 않고 본당신부의 주관적 사목방향을 우선해서는 안된다. (교회법 519조 참조)

제주교구는 2003년부터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구공동체의 쇄신을 교구 중점사목방침으로 삼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당신부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교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사목방침에 따라 맡겨진 본당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교회법 519조 참조) 이에 본당신부는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최우선 사목방침으로 삼고 본당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본당신부의 사목계획은 소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에 결들여 본당신부의 다양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 그것은 소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준다. 처음 구성단계에서는 앞서서 도움을 주면서도 어느정도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가면 스스로 양육하고(Self-ministering), 스스로 생장하며(Self-propagating), 스스로 부양하는(Self-supporting) 소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와 협력을 다해야 한다. (프리트 로빙거 주교, 아시파 4차 총회 기조강연, 참조)

2 본당신부 사목적 협력

본당 최우선 사목방침으로
'소공동체'를 정하기

본당소공동체
활성화위원회 혹은 전문화
위원회를 구성하기

구역반장을 중심으로 본당
팀트레이닝을 실시하기

지속적으로
본당소공동체 참석하기

본당소공동체협의회에
참석하여 동기부여해 주고
격려해 주기

매달 본당소공동체의
날을 개최하기

본당소공동체
봉사자들이 영적자질을
갖추도록 양성하기

본당 사목평의회 총회를
통해 대책을 매년 주기적으로
소공동체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모색하기

평신도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

1 평신도의 올바른 이해

소공동체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관을 탈피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진 친교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지난 날 수동적인 협력자 내지는 보조자의 자세를 넘어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 구현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평신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다.(교회헌장 4장 31항 참조)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965, 21항 참조) 결국 평신도는 지상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을 염두에 두며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공동체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소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에 동참을 해야 한다.

2 평신도의 동참

소공동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본당소공동체
교육에 참석하기

본당소공동체에 꼭
참석하여 친교의 공동체를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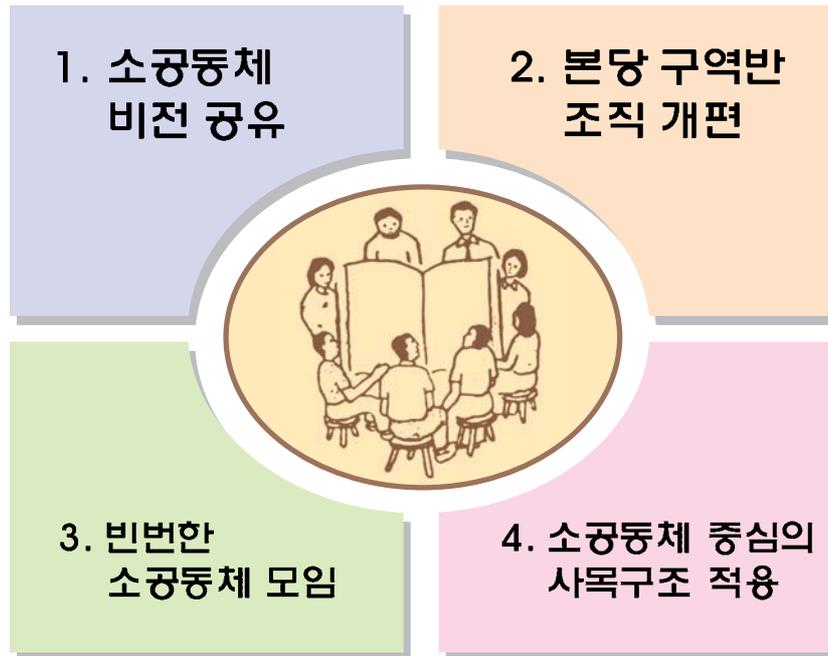
교구 및 본당성경공부 및
성서쓰기를 생활화하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을 공부하여
이상적인 교회상을
지향하며 살아가기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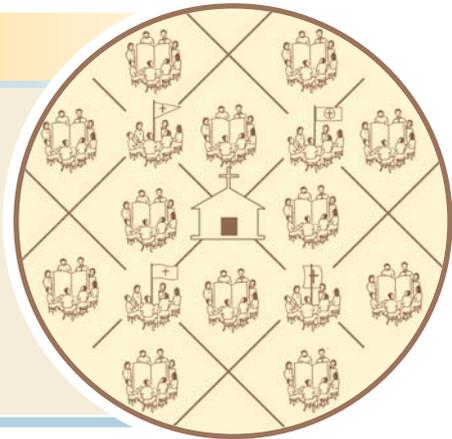
소공동체 활성화 조건



1. 비전 공유

1 Vision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느님백성 전체가 공동책임과
함께 참여하는 친교의 공동체의
실현



2 비전 공유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특히, 사제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



사제들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 사제들 의견 청취(사제 모임시)
- 사제들 격려 및 협력 유도(사목방문시)
- 사제들 교육(사제 연수시)
- 사제, 수도자, 평신도 팀트레이닝
- 지속적이고 통일된 사목계획 제시
- 교구 및 본당에 적합한 본당 모범 사례발굴 제시



신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 본당 사목계획 제시
- 본당별 소공동체 교육 실시(본당성장 5단계 및 소공동체 기본이해)
- 본당 사목위원 및 신심단체 임원의 의견 청취 및 만남
- 체계적인 본당 봉사자 양성
- 수시로 신자들 격려 및 협조
- 자발적 참여 및 협력 유도

-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거부감
- 소공동체 사목의 부담감 증가
- 신심단체와의 갈등 및 충돌
- 교회성장의 장애로 작용
- 소공동체 참된 의미 퇴색

2. 본당 구역반 조직의 개편

기존의 구역·반 소공동체를 모든 교우가 거주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소공동체 모임에 알맞은 정도로 재편하여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1 개편전

구분	내 용	문 제 점
본당	현행 구역반별 세대수 편차 : 5세대~3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동체 모임 참석률 저조 및 활동 중단 ▪ 원활한 친교 나눔 불가능 ▪ 소공동체 모임 봉사자 부족과 잉여 등 불합리
교구	불명료한 본당관할 구역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구역내 교우들 소공동체 참석률 저조 및 전무 ▪ 본당내 교우들 혹은 본당간 불필요한 위화감 조성 ▪ 소공동체 봉사자 부족 및 사기 저하

2 개편후

구분	내 용	개 선 점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반은 10세대~15세대로 ▪ 구역은 3~4반으로 편성(단, 본당 여건과 상황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한 소공동체 참여로 참석률 증가 ▪ 원활한 친교 나눔과 소공동체 모임 활성화 ▪ 소공동체 봉사자 선정 용이
교구	본당관할구역의 명확한 조정 (단, 교구 여건과 상황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구역이 없는 관계로, 기존 기타구역내 교우들의 소공동체 참석 용이 ▪ 본당간, 신자간 불필요한 위화감 해소 ▪ 소공동체 봉사자 선출 용이

3. 빈번한 소공동체 모임

빈번한 소공동체 모임은 소공동체가 특별한 모임과 어색한 만남을 넘어,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증가시켜 주고, 친밀감을 더욱 강하게 해 주며 연대의식을 높여 주어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1 제 약

- 바쁜 현대생활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 시간상 제약
- 레지오를 비롯한 본당 신심단체와의 중복에 따른 부담감
- 빈번한 만남시 개인적 삶의 노출에 대한 걱정과 부담

2 대 책

- 직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이들을 위해 향후 속인주의 반편성 및 시간 고려(직장소공동체, 남성소공동체, 청소년소공동체 등)
- 정해진 소공동체 모임시 신심단체 모임은 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소공동체와 신심단체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교육 및 홍보
- 생활나눔에 대한 비밀 유지 교육 및 복음중심의 나눔 유도
- 모임 횟수는 반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반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서서히 늘려가도록 유도(매월1회<매월2회<매주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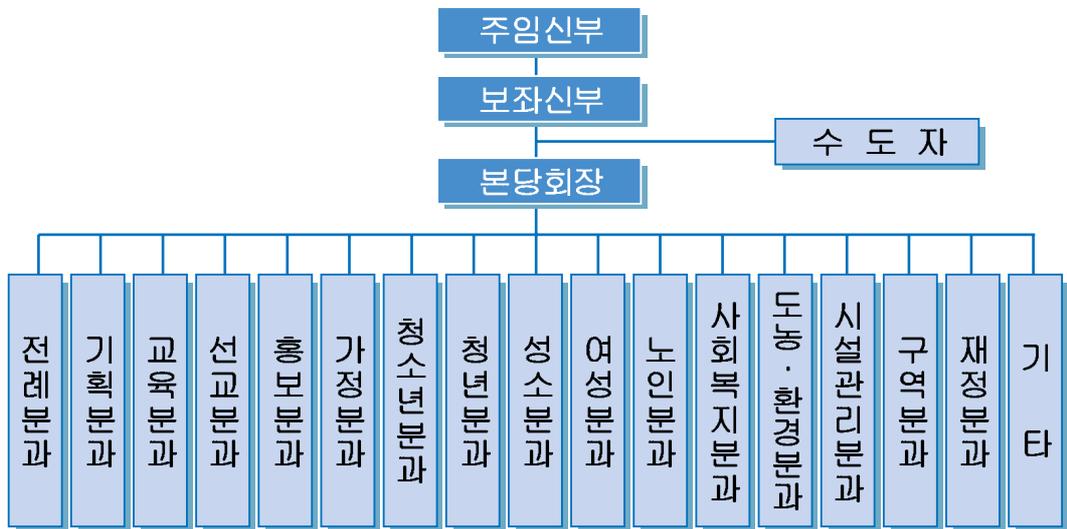
4. 본당 사목구조 개편

본당 사목구조는 구체적인 하느님 백성의 삶의 현장이자 교구사목의 중심으로서 교회의 본질인 친교와 일치 공동체를 구현함은 물론 그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부식(扶植)시키는데 앞장 서 봉사하여야 한다.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교회운영 28항 참조)

이에 본당(사목구)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하느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연대의식과 책임을 갖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본당 구역·반소공동체 중심의 사목구조로 개편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 현 본당 사목구조

현 제주교구 본당사목구조는 기능 중심의 중앙집중식 조직구도이다. 본당신부를 정점으로 각 분과의 대표들이 모인 사목협의회가 본당 사목을 실행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본당신부의 역량과 역할 그리고 분과대표들의 협력에 따라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사목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평신도들의 참여와 자율성은 알게 모르게 극히 제한된다.



문 제 점

현 본당사목구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에 따른 하느님백성의 참여와 공동책임,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기능위주로 선정된 소수의 사람들만 사목의 실행적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은 방관자 혹은 소극적 참여자로 머물러 있게 된다. 특히 본당사목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구역반장은 사목협의회 한 구역분과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적 하부 전달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제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제이동시 사목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며, 평신도의 다양한 사목적 욕구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평신도들이 본당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의식,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여 교회공동체로 하여금 멀어지게 된다.



3 본당 사목구조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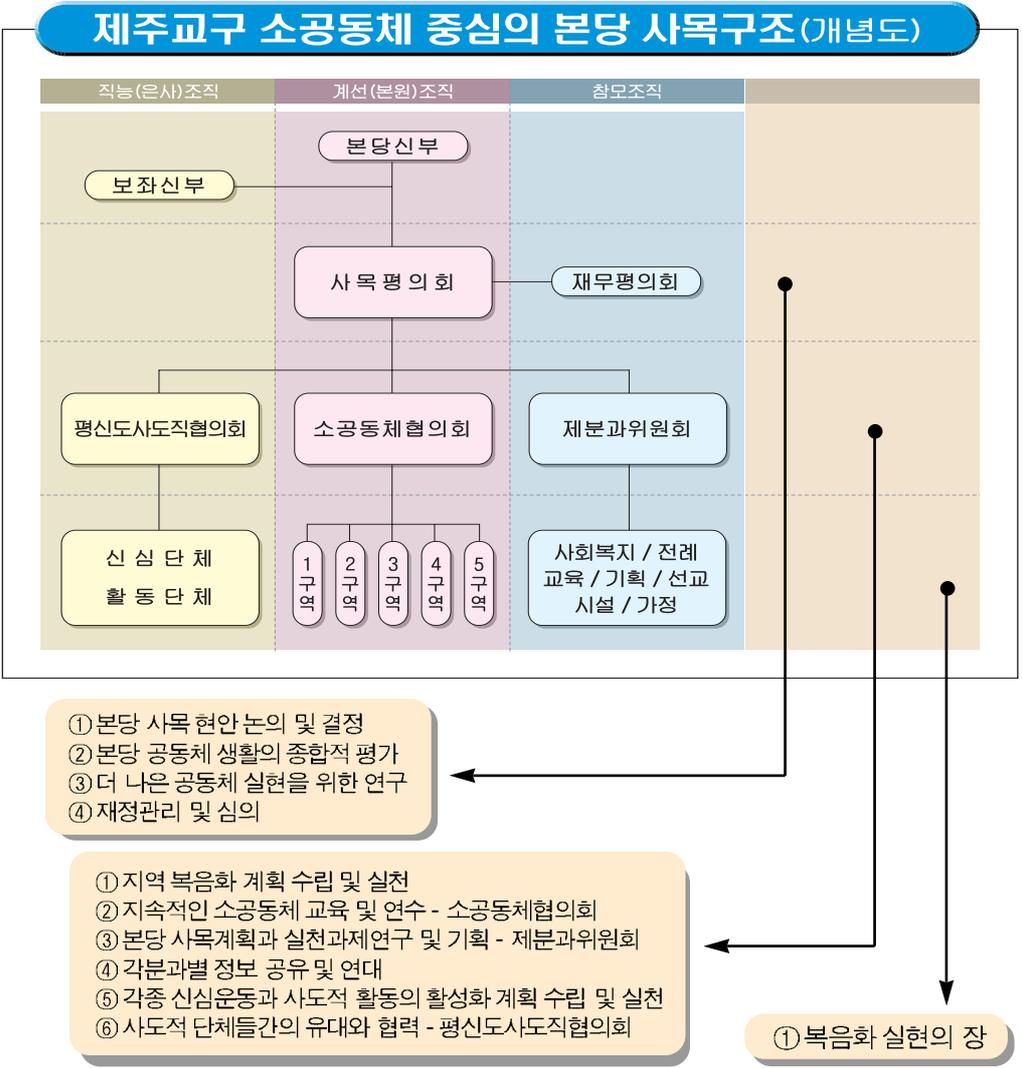
현 제주교구 본당사목구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개혁을 실현 하는데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다. 개편되는 본당사목구조는 기존의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구역·반을 교회의 원형이자 작은교회로서 사목의 중심에 두며 권한과 책임, 참여와 친교의 '소공동체 중심의 본당사목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본당사목조직과 현행 사목조직과의 비교

구 분	현행 본당사목구조	새로운 본당사목구조	비 고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분과위원회 중심 • 지역대표(소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소공동체) 중심 • 각분과·신심단체 지원 	모든 이들의 능동적 참여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장 다수 • 지역대표 전무 혹은 극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분과위원장 +사도직단체 간부 	”
기획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제분과위원장 +사도직단체 간부 	”
실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과위원장 주도 • 지역대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 주도 • 분과위원장+사도직단체 간부 협조 	”
실행현장	성 당	지역, 구역·반	삶의 자리 중심
활동내용	신앙과 삶의 괴리	신앙과 삶의 일치	”

3 새로운 본당 사목구조

새롭게 개편될 본당 사목구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소공동체협의회를 중심에 두면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제분과위원회를 양쪽에 균형있게 조화하여 서로 참여와 공동책임을 이루는 본당 구역·반소공동체 중심의 사목구조이다. 구역반이 본당 사목의 실행적 주체가 되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본당운영에 참여와 협력을 다하게 되며, 사도직단체와 제분과위원회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가적인 조언을 받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목을 수행할 수 있다.



보충설명

본당 사목구조의 성공은 '조직간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상호유기적 관계 정립', '적절한 인적구성', '사목실행내용'이 포함될 때 가능해진다. 위의 새로운 본당 사목구조 역시 일반 사회조직상 분류처럼, 계선조직을 중심으로 참모조직과 직능조직(은사조직)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계선조직은 본당운영의 핵심조직으로 본당신부(사목평의회)소공동체협의회(구역·반으로 이루어지며, 교회 구조원리에서 교계원리와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교계적 친교를 이루면서 교회의 복음화사명을 수행한다. 참모조직은 계선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이며 조사, 연구, 기획을 통하여 계선조직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당의 제분과위원회가 속한다. 직능조직(은사조직)은 각 단체의 특성과 은사를 계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본당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과 협력을 다하는 조직형태이다. 본당의 평신도사도직 단체가 속한다.

개선점

새롭게 개편된 본당 사목구조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를 지향하고, 함께 공동책임과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사목구조라 할 수 있다. 구역·반소공동체가 본당사목의 실행적 주체가 되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본당운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다할 수 있다. 또한 성직자 위주가 아닌 공동책임과 참여를 통해 평신도가 본당운영에 참여하기에, 사제 이동 시에도 사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의 과정이 길고 다양하여 사목계획의 결정과 진행에 있어 시간적으로 지체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신도들에게 본당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 신앙과 삶의 일치감을 느끼게 하여 교회를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로 자리하게 한다.

4 본당사목구조 개념 설명

- 사목평의회는 교회법(536조 1항)에 따라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 사목현안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소공동체협의회 임원과 구역장들, 제분과위원회 위원장들과 사도직단체협의회 임원들로 이루어졌다.
- 소공동체협의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친교와 일치 의 본당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당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본회의 회장단(회장, 총무, 서기)과 구역장과 반장으로 이루어졌다.
- 구역·반 소공동체는 본당 공동체의 기초단위로서 교우들의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신앙의 활동들이 자라나게 하여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편성된다.
- 제분과위원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지침에 따라 본당 사목의 구체적 계획과 실천과제를 연구기획하여 본당사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본회의 위원장단(위원장, 총무, 서기)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루어졌다.
-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지침에 따라 각종 신심운동 과 사도직활동을 통하여 본당의 복음화에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본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과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대표로 이루어졌다.
- 재무평의회는 교회법(537조)에 따라 본당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의 재산관리, 예결산 등 제반 재무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본당신부를 포함 하여 본당신부가 임명한 위원 3명 이상 5명으로 이루어졌다.

부 록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운영위원회 회칙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사목평의회라 칭하며,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교회법(536조 1항)에 따라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신부와 함께 본당 사목 현안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본 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다음 기능을 가진다.

- ①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② 본당 사목 현안 논의 및 결정
- ③ 본당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평가
- ④ 더 나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구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① 본 회는 소공동체 협의회 임원 및 구역장들과 제분과 위원회의 위원장들과 사도직 단체협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본당 주임신부는 보좌신부와 수도자 및 전문인들 중에 신자 약간 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본 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본당 주임신부이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단, 본당 주임신부 유고시에 보좌신부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의장은 평신도대표가 되며 '총회장'이라 불린다. 부의장은 주임신부의 위임을 받아 본 회를 주관할 수 있으며 평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③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회의록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3장 임기

제6조(임원과 평의원)

본 회 임원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보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소집)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 회의 임원선출, 본당의 사목계획과 활동, 예결산 등을 의결한다.
- ② 월례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당 제반 운영 사항을 협의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 ① 본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의결된 사항일지라도 본당 주임신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소공동체 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회의는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소공동체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친교와 일치의 본당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당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본 회의는 본당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진다.

- ① 지역 복음화 계획 수립 및 실천
- ② 본당과 신자들의 교량 역할 및 구역간 유대강화
- ③ 지속적인 소공동체 교육 및 연수
- ④ 본당 현안 협의 및 제반 본당 행사 협조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① 본 회의는 본 회의 회장단(회장, 총무, 서기)과 구역장 및 반장으로 구성된다.
- ② 본당 주임신부는 소공동체 관련 전문인들 중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본 회를 대표하여 회장을 두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본 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②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회의록과 자료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두며, 본 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3장 임기

제6조(임원 및 위원)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경우에는

구역장 반장의 임기를 본 회의 임기로 본다.

제7조(보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소집)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 회의 임원 선출,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 위한 활동계획과 예결산 등을 의결한다.
- ② 월례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실천 사항 등을 협의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 ① 본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본당 사목평의회에 보고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5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칙

- 1. 본 회의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에 준한다.
-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본당 주임신부의 지침에 따라 각종 신심운동과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본당의 복음화에 협력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본회는 본당의 복음화에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진다.

- ① 각종 신심운동과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 ② 본당 내의 사도직 단체들간의 유대와 협력
- ③ 본당 복음화 사업에 적극 동참
- ④ 본당 현안 협의 및 제반 본당 행사 협조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① 본회는 본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과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 ② 사도직 단체는 제주교구 교구장과 본당 주임신부가 인준한 본당의 활동 및 신심 단체를 망라한 모든 단체를 지칭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본회를 대표하여 회장을 두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사도직 단체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②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하는 '부회장'과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회의록과 자료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두며, 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3장 임기

제6조(임원 및 위원)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의 임기를 본 회의 임기로 본다.

제7조(보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소집)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 회의 임원선출, 본당 사도직 단체 활성화 및 본당 복음화 사업 동참을 위한 활동계획과 예결산 등을 의결한다.
- ② 월례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회원들의 유대와 협력, 본당 복음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 실천 사항 등을 협의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 ① 본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본당 사목평의회에 보고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5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천주교 제주교구 제분과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제분과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본당 주임신부의 지침에 따라 본당 사목의 구체적 계획과 실천과제를 연구·기획하여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본회는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① 본당 사목 계획과 실천 과제 연구 및 기획
- ② 각 분과별 정보 공유 및 연대
- ③ 본당 복음화 사업에 적극 협력
- ④ 본당 현안 협의 및 제반 본당 행사 협조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① 본회는 본회의 회장단(회장, 총무, 서기)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으며 본당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 가. 기획분과 위원회
 - 나. 전례분과 위원회
 - 다. 선교분과 위원회
 - 라. 교육분과 위원회
 - 마. 사회복지분과 위원회
 - 바. 가정분과 위원회
 - 사. 청소년분과 위원회
 - 아. 재정분과 위원회
 - 자. 시설관리분과 위원회
- ③ 각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가. 기획분과 : 본당 운영계획, 본당 사목계획성 작성과 평가 및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업무

- 나. 전례분과 : 본당 미사 전례 및 교회예식에 관련된 업무
- 다. 선교분과 : 본당 선교활동, 예비신자 및 쉬는 교우 인도, 선교단체의 조직, 운영, 활동에 관련된 업무
- 라. 교육분과 : 신자교육, 피정, 연수 등의 계획수립과 본당의 인재양성과 예비신자 교리에 관련된 업무
- 마. 사회복지분과 : 지역사회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봉사과 계발, 사회정의 구현 및 환경 보존에 관련된 업무
- 바. 청소년분과 :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청년단체의 조직, 교육, 기도 및 성소에 관련된 업무
- 사. 가정분과 : 생명의 존엄성 구현과 신앙교육, 연수 계획 수립 및 가정평화에 관련된 업무
- 아. 재정분과 :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본당 기본재산의 관리, 각종 현금과 회계장부의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 자. 시설관리분과 :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본회를 대표하여 회장을 두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 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②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회의록과 자료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두며, 본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3장 임기

제6조(임원 및 위원)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보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소집)

-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갖으며 분과별 정보공유와 연대,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실천 사항 등을 협의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결)

- ① 본 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본당 사목평의회에 보고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재무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본당 재무평의회라 칭하며,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교회법(537조)에 따라 본당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의 재산관리, 예결산 등 제반 재무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동을 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본 회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본당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본당 재산의 총체적 관리
- ② 수입, 지출에 따른 예결산
- ③ 기타 재무 관리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임원)

- ① 본 회의는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본 회의는 총무 1명을 지명하고, 총무는 회의자료 수집과 관리, 회의록 작성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제3장 임기

제5조(위원)

본 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보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7조(소집)

- ① 본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본당 제반 재무 사항을 협의한다.
- ② 임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본당 주임신부가 소집한다.

제8조(의결)

- ① 본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본당 주임신부가 결정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본당 사목평의회에 보고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9조(자료 요청 및 수집)

- ① 본 회의는 회의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그 소지자 내지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본당 재무 자료의 소지자 내지 관리자는 위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칙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천주교 제주교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안

초판인쇄 2008년 2월 10일
초판발행 2008년 2월 17일

펴 낸 이 강우일
펴 낸 곳 사목국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114
전 화 064-751-0146
팩 스 064-756-5531
이 메 일 sky8088@hanmail.net

인 쇄 새미출판기획
전 화 064-752-3656
팩 스 064-752-3658
이 메 일 sm3s@naver.com

- 이 책의 전부나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저작물 또는 인쇄물에 실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